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시행 2024. 1. 11.]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51호, 2024. 1.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재정행정담당관), 044-204-734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용방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2조에 따른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2호,2019.11.1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및 별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0.12.14.>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21.12.24.>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22.12.31.>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24.1.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8
일반직 계	8
5급	5
6급	3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9
일반직 계	9
6급	5
7급	2
8급	2